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5호, 2016.12.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을 6개월 또는 1년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받도록 하고,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성분 검사기관으로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환경부령 제68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를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51조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 및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을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검사자

- 1) 방류수의 수질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 2) 퇴비·액비의 성분 :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나. 측정·검사주기

-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3개월(퇴비·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은 6개월)
- 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6개월(퇴비·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은 1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6개월
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1년